

# **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주의료원지부**

# **2017년 산별 현장 교섭 합의서**

공주의료원 노·사는 2017년도 단체협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,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준수 할 것을 확약한다.

## ▶ 진료지원 부서

### 1. 콜수당 및 대기수당 차별금지

의료원은 약제과, 중앙공급실 근무자들이 토·일·법정휴일에 대기근무 시 대기수당 10,000원 지급한다.

- ① 2시간 이내 근무 시 콜수당 20,000원 지급한다
- ②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 근무 시 콜수당 40,000원 지급한다.

단, 약제과 기존 당직근무 시 현행대로 당직비 지급한다.

### ▲ 근로기준법 법정수당 준수

#### 1. 영상의학과, 병리과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

- ① 영상·병리과 2018년 12월 31일 까지 다음과 같이 수당 지급한다.

현재 야간 전당 2인 체제 유지하여 기존 당직비 5000원 인상과 시간외 1시간 추가 인상하여 [55,000원 + 시간외 2시간] 지급한다.

- ② 영상·병리과 2019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인 추가 인력 충원하여 3인 야간전담제체로 운영한다.

- ③ 각 ①항, ②항에 해당하는 근무표는 해당부서 근무 상황에 맞게 각 부서에서 재량으로 운영한다.

#### 2. 모든 당직 근무 부서는 기존 당직비 5000원 인상과 시간외 1시간 추가 인상하여 [55,000원 + 시간외 2시간] 지급한다.

단, 장례지도사는 근무형태에 대해 2018년 하반기에 추후 논의한다.

▲ 병리과, 영상의학과, 원무과, 약제과, 안내 법정 휴게시간인 60분 보장  
의료원은 응급환자의 진료지원 등을 위해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서(영상, 병리.  
원무, 약제, 안내) 월별 대기 근무표 작성하여 운영하며 1시간 조기퇴근 실시한다.

## ▶ 교대근무자 요구안

### 1. 의료법 준수를 위한 간호등급 3등급이상 상향

의료원은 2018년 12월31일까지 간호 5등급 안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며, 의료법 준수를 위해 간호 3등급 상향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.

2. 의료원은 신규채용 간호사들이 의료원의 업무 적응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부여하여 환자 안전 보장 및 전문적이고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 한다.

- ① 의료원은 신규채용 간호사 입사 시 4주 이상 트레이닝 최소 기간 보장한다.
- ② 병원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 후 기간을 조절한다.

3. 의료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병동도우미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추가 1인 배치한다.

4. 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관례처럼 시행하고 있는 입원 환자 수만 보고 의료원내 근무자들의 연가, 오프 수 조절을 위하여 근무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정하지 않는다.

## ▶ 공통 요구안

1. 의료원은 조합원 증원 시 즉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적용에 합의한다.

- ① 224명 조합원 수 증원 시 근로시간면제 추가 250시간(3250시간)
- ② 249명 조합원 수 증원 시 근로시간면제 추가 250시간(3500시간)
- ③ 274명 조합원 수 증원 시 근로시간면제 추가 250시간(3750시간)
- ④ 299명 조합원 수 증원 시 근로시간면제 추가 250시간(4000시간)
- ⑤ 근로시간면제는 노동조합에서 자유로이 운용한다.

## 2. 가족수당

2017년 지방공무원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.

2018년도 상반기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도 승인 후 조속히 적용한다.

3. 의료원은 각 부서에서 환자진료와 간호, 처치를 위해 또는 업무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일주일 전 소모품 신청서 제출 후, 요구한 소모품에 대해 자체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.

4. 계약직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노동인권을 유린하는 사원증에 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직종과 직급만 기재한다.

5. 전 직원 근태신청 방법을 일원화 하여, 본인 스스로 EMR 결재하도록 한다.

(의료원 내 모든 근무자, 의사 포함)

## 6.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한 차별폐지 및 단체협약 사항 이행촉구

① 의료원 전반적인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2018년도 한시적으로 보수교육 받은 전 조합원들에 대해 일괄 공가 부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단체협약대로 이행 한다.

② 단체협약 합의사항(2019.1.1. 적용) 의료원은 직무와 관련된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 교육에 소요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.

**2018년 3월 15일**

**사측대표**

충청남도 공주의료원

원장 김영배



**노측대표**

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

위원장 나승자

